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2021. 1.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CONTENTS



I. 개 요	1
1. 추진배경	1
2. 지원개요	1
3. 업무 프로세스	2
II. 대상자 발굴 및 선정	4
1. 기본원칙	4
2. 소득·재산 조사	4
3. 확인 조사	5
4. 지원연계 실시	5
III. 선정 기준	6
1. 보장가구의 결정	6
2. 소득 조사	9
3. 재산 조사	13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17
5. 소득인정액 산정	33
서 식	37
질의응답	50
부 록	56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확인조사 (p.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칙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칙 - 자격 변동(정지, 상실 등) 시점은 '사유 발생 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이 원칙
지원연계 실시 (p.5)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p>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p>2021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p> </div>
보장단위 (p.7)	<p>2)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p><20.2월 신규></p>	<p>2)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u>자립지원 별도가구</u> 등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자립지원 별도가구)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95 ~ 196.)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부분을 준용하여, (소득기준) 취·창업자녀 판정소득액이 B×100%와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이고, (재산기준) 취·창업자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 미만인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득 기준 혹은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동 특례는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p>* A :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취·창업자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p> <p>** 취·창업자녀의 소득 평가액 산정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예시 : 부모 2인과 취업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취업 자녀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인 1,827,831원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인 306만원 이상인 경우 동특례 미적용</p> </div>

구 분	2020년	2021년
소득 산정기준 (p.10)	<p>다. 소득 산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p> <p>-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p> <p><신설></p>	<p>다. 소득 산정기준(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p> <p>-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p> <p>- <u>육아, 학업, 기타 등의 사유로 자발적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 반영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적 자료 참고</u></p>
일반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p.24)	<p>(1) 금융재산</p> <p>(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p>	<p>(1) 금융재산</p> <p>(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u>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u>),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p>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p.28~29)	<p>(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p> <p><중략></p> <p>※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0년 일 66,80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p>	<p>(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p> <p><중략></p> <p>※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u>21년 일 69,760원</u>)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p>
	<p>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p> <p>(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및 <u>승합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것)</u>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p> <p>(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p> <p>※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p>	<p>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p> <p>(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p> <p>(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p> <p>※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p>
	<p>(5)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승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p>	<p>(5) <u>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것</u>중 차령 10년 이상</p>

구 분	2020년	2021년						
	당하는 것)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u>500만원</u> 미만인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p.3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u>소진시까지</u> 수급(권)자 본인 재산으로 산정 						
소득 인정액 산정 (p.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기준중위소득의 50%	913,916	1,544,040	1,991,975	2,878,687	3,314,302	3,748,599	3,748,599
재산범위 특례 (p.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등 관련 재산범위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21년 상반기 확인조사 시 동 특례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기존 '차상위 확인사업' 대상자가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1년간 추가 보장 가능.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는 기 준용하므로 동 특례는 근로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등 관련 재산범위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이자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1년간 추가 보장 가능 * '21년 상반기 확인조사 시 동 특례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I

개요



1 추진배경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되고 있으나,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
-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2 지원개요

-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3 업무 프로세스

① 발굴 : 신청대상군 명단 발굴

- (시·군·구, 읍·면·동)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단가스·단수 및 채납가구**,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및 채납가구, 무허가건물·판자촌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례관리대상 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 활용**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2학기 이상 미납 가구는 반드시 확인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6개월 이상 채납가구, 단가스·단수 가구는 반드시 확인

②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발굴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안내문 발송 대상가구 선정 (시·군·구 협조)

- 지자체 보유자료 및 한시생계('09), 사회취약계층 발굴조사('10), 일제조사('14) 등 기존 발굴된 가구 등을 확인하여 중복가구 제거, 누락가구 추가

- 발굴된 가구의 가구특성, 자료의 부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보호 불필요 가구 제거

- (안내문 발송)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 발송

※ 노인가구 등 안내문으로 제도 이해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안내 등 병행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안내·작성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③ 조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행복e음 소득·재산 보유대상(가구원모두)은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 다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행복e음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활용에 대해 안내 및 동의 필요<별지 제1호 서식>

④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기초생활보장팀)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책정

- 신청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
- (소명신청자의 처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범위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결정

● (자격반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격은 자격이 최종 결정된 날부터 유효

- 단, 소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유효

⑤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통지(기초생활보장팀)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선정 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서 발급 <별지 제6호 서식>

⑥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수행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⑦ 연계지원(서비스연계팀, 읍면동)

- * 각 부처사업은 해당부처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원연계 진행
- (읍·면·동)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 (서비스연계팀) 연계된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별 대상 여부 최종 결정

II



대상자 발굴 및 선정

1 기본원칙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연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 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 자원 연계
- **(선정기준 단순화)**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사람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2 소득·재산 조사

-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행복e음 자료보유자)**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 * 단, 20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활용
-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3 확인 조사

-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자격정지 등 처리 (자격정지 1개월 전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인적정보 변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 사망, 말소, 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거주불명등록자, 출입국만료보장중지, 군입대, 군제대, 교정시설입소, 교정시설퇴소, 사망의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등록대상자
 - 자격 변동(정지, 상실 등) 시점은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이 원칙

4 지원연계 실시

- 지자체 지원 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연계추진
 - 지자체·민간지원 사업 :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지원 적극 추진
 - *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부록의 ‘2021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인쇄본 동봉

Ⅲ



선정 기준

1 보장가구의 결정

가. 보장단위

1) 원칙

-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 *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단,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가구단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2)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 급여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자립지원 별도가구 등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

- (자립지원 별도가구)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95 ~ 196.)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부분을 준용하여, (소득기준) 취·창업 자녀 판정소득액이 $B \times 100\%$ 와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이고, (재산기준) 취·창업자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 \times 18\%$ 미만인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득 기준 혹은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동 특례는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은 고려하지 않음.

* A :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취·창업자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창업자녀의 소득 평가액 산정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예시 : 부모 2인과 취업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취업 자녀의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인 1,827,831원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인 306만원 이상인 경우 동특례 미적용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국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4)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 * 경찰서에 가출·행불신고 후 1월 경과자(30일로 산정),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절차진행중인)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행불 사실을 확인한 자(사실조사보고서 첨부)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상근예비역(현역), 사회복지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나.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2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text{소득평가액}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text{근로유인요인} - \text{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나.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공적이전소득 반영 항목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② 실업급여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④ 보훈급여(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 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⑥ 직업훈련수당
- ⑦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 ⑧ 양육휴직수당
- 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다. 소득 산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 상시근로소득¹⁾,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산정
 -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육아, 학업, 기타 등의 사유로 자발적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 반영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적 자료 참고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조회되는 이자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제외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1) *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④ 한국장애인공단자료
-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보훈대상자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참전명예수당		○	○
기초연금		×	×
장애수당	장애수당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
	공무원연금급여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실업급여		○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	×
	장해급여	○	×
	유족급여	○	×
	상병보상연금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	×
	진폐유족연금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	×
	간호수당	○	×
	무공영예수당	○	×
	6.25 자녀수당 등	○	×

분 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독립유공자 보상금		○	×
진폐위로금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	×
	장애연금	×	×
	간호수당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	×
	부양가족수당	×	×
	중상이부가수당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	○
	피부양보조금	○	○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
	간병비	×	○
	특수식이구입비	×	○
만성질환 등의 6개월 이상 의료비		×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75%)		×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발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
대학생 등록금 지출		×	○

3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²⁾, 건축물³⁾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2) 논·밭·임야 등

3) 건물, 시설물 등

2)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소득의 재산환산을 적용함에 유의

●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대상 가구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적용한도

- 조사대상 가구원이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1억원 주택 보유 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9,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 차액 9,000만원 중 4,2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액으로 차감하고, 차액 4,8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을 적용

3)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4)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다.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률 0.95를 적용함에 유의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 ①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 ②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률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청주시 面·面지역, 충주시 面·面지역, 제천시 面·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面·面지역, 진주시 面·面지역, 김해시 面·面지역, 사천시 面·面지역, 거제시 面·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3) 임차보증금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⁴⁾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임차보증금가액} = \text{임차보증금} \times \text{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4) 선박·항공기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⁵⁾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5) 동산

-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동산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로 분류) 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냉장고,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건설기계는 동산

4)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5)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6) 입목재산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9) 분양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

1)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2) 금융정보 등 조회

- 법률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조사대상자 : 가구원
 -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 ISA계좌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읍·면·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일반·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

(1) 금융재산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6)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 공제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에 한해 적용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함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다음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의해, 연간 한도 내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의 수령금액 중 사용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공제는 2016년부터 삭제

- 다만, 2015년 12월말 이전 기적용한 경우는 계속 적용 가능

(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2) 일반재산

(가)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한 주거용재산 공제

-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거용재산 공제 후 잔여가액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

6)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4)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 도	증 빙 서 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⁷⁾정보를 반영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에 따른 기타 산정되는 재산 산정 시 해당 보조금을 부채(공공기관 대출금)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

7)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취득가액(*잔가율)
-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2)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과약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함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다)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로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영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또는 다)-(2)~(9)에서 1대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생보 심의 불필요)
- (7)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9)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10)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6)~(10)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5)” 이륜자동차는 2대까지)에는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상기 (6)~(10)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7)~(10)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트,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싘타모, 깔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타우너, 다마스 등)
 -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 ④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⑤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1년 일 69,76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의 자동차
-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4.5.1인 경우 '14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 (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
- (5) 소형이하 승합·화물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것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6)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7)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8)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9) 소유자의 요청·동의를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나)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사도 또는 사·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 (다)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으로 표기됨
 -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야 함
 -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법칙금

50회 이상 미납, ㉔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10)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11)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6)~(10)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6)~(10)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6)~(1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수급(권)자 본인 재산으로 산정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사회복지서비스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자격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1)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본인소비분 확인

-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마. 부채

-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금융회사 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2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⁸⁾),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부채 인정범위

구 분		인정 여부
부 채 출 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에 의해 확정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

* 공공기관(지자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각종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 금융채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채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8)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대부(중개)업체 :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조회

- **공제대상 부채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
 - *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타 재산의 증가
 - 단, 최초로 조회되는 부채는 용도를 따지지 않음
 - 또한, 자격 변동에 영향이 없는 재산·부채의 변동은 소명 없이 조회된 결과를 반영하고, 부채의 증가,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명

5 소득인정액 산정

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u>1,827,831</u>	<u>3,088,079</u>	<u>3,983,950</u>	<u>4,876,290</u>	<u>5,757,373</u>	<u>6,628,603</u>
기준중위소득의 50%	<u>913,916</u>	<u>1,544,040</u>	<u>1,991,975</u>	<u>2,878,687</u>	<u>3,314,302</u>	<u>3,748,599</u>

나.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원칙** : ‘국민기초생활제도’ 준용
- **예외**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추가 공제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함(본인이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50%	주1 참조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21년 기준 :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및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2 참조 주3 참조
○ 24세 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2021년 기준 :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21년 기준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4 참조
○ 만 75세 이상 노인 (1946.12.31. 이전출생자) ○ 북한이탈주민 ○ 등록장애인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5 참조

▶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 주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 주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
- ※ 주3)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 주4)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 주5)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마.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0원”으로 처리

1)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2) 재산범위 특례

-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등 관련 재산범위특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를 준용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1년간 추가 보장 가능
- ※ ‘21년 상반기 확인조사 시 동 특례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_39

[별지 제1호의5서식]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_44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_45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_48

[별지 제7호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_49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_____)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⁶⁾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⁷⁾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거구에 한함)
- 2),3) 해당자에 한함
-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7)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p> <p>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p> <p>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p> <p>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p>
<p>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p>[]</p>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p>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p>	<p>[]</p>
<p>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p>
<p>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p>
<p>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p>
<p>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p>

유의사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현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교육감 귀하

-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 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 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 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 형성)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0.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지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2.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차상위 계층	생년월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질의응답

1. 보장가구의 결정_53
2. 소득재산 조사_53
3. 기타_55
4. 복지서비스 지원_56



1 보장가구의 결정

① 가구구성원 확정 시 사실혼 관계 및 사실이혼 관계 인정 여부

-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나,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조사 등을 거쳐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 * 배우자와 혼인관계 유지상태이나 10년간 별거중이며 다른 가족과도 왕래 없이 혼자 살고 계심.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을 위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가구의 소득상태 등 확인조사 후 개인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② 보장가구중 기초특례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가구 중 기초특례 대상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여 선정하되, 기초특례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① 사적이전소득은 포함하나요?

- 차상위계층 확인 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양비 및 보장기관 확인소득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도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고자 증여재산도 재산 조사범위에 포함됩니다.(2012.2.1부터 적용)

② 행복e음 자료 보유자 및 미보유자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은?

- 행복e음 자료보유자(가구원 모두)
 -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가구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복지제도(기초연금, 보육등)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행복e음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구구성원 모두 행복e음에 유효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복e음 자료 활용이 불가하므로 신규 대상자(행복e음 자료미보유자)로 간주하여 차상위를 신청하여야 함
 - * 다만, 차상위계층 선정 시 '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되고 '10.14 이후 금융재산을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조사표를 활용하여(직권기능) 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조회일을 확인하여 행복e음 개통('10.1.4.) 이후 조회된 금융재산만 반영하고, '10.1.4 이전 조회된 금융재산은 다시 조사하여 반영
-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③ 소득산정 중 공적자료상 조회된 일용근로 적용방법?

- 일용근로소득이 많고 최근3개월 평균소득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소득재산은 공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자가 공적자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④ 주택연금의 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되며 주택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3 기타

① 읍·면·동에서 ‘차상위계층 결정 통지서’를 발행할 경우 발신명칭은?

- 사회복지 통합업무에 따라 서식의 발신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차상위계층 결정 통지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 * 시·군·구청은 ‘차상위계층 결정 통지서’ 발행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에 위임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한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 다만, 금융조회 처리기한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 *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가구 등 기한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 시 민원인에게 처리기한에 대한 별도안내 필요

③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가 전출 간 이후에도 “공통자료정비>미처리건”으로 조회가 되는데 전출 이후 조사대상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전부 확인하여, ‘미처리’ 상태를 ‘처리’ 상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를 일괄 다운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미처리’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4 복지서비스 지원

① 차상위계층은 어떤 복지서비스 혜택이 있나요?

- 정부양곡 50% 할인 가격에 이용, 통신·전기 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등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페이지의 '2021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차상위계층이라고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 * 민원인이 차상위 자격이 없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조사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부록

2021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 ▶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_58
 - 1. 생계 지원_58
 - 2. 의료 지원_62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_65
 - 3. 주거 지원_66
 - 4. 교육 지원_67
 - 5. 돌봄 지원_70
 -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_73

- ▶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_75
 - 1. 생계 지원_75
 - 2. 의료 지원_78
 - 3. 주거 지원_79
 - 4. 돌봄 지원_80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기부식품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계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양곡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공공산림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 최대3년간 2년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인 이상 가구는 6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8,720원~7만 6,72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또는 장년층 우선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 주200시간 근무, 월170만원 가량 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로 신청,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산림청
영양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저축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3~6급) ● 장애이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3~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월 2~4만원 ● 장애이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 -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발급비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관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관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 기타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1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경우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38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만원~ 38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 자활근로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48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포함) -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이하)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를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생활지원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	● EBS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소진 없이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EBS 데이터 안심업선(KT, LGU+), EBS 데이터팩(SKT)	● 통신사 고객센터 (☎ 114)를 통해서 신청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학교유급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	● 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의 지원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농림 축산 식품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가스요금 경감 * 상위(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산업 통상 자원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전기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cyber.kepco.co.kr) 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123) 	산업통상자원부
열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지역난방공사(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산업통상자원부
미소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 前~연체 30일 연체 31일~89일 연체 90일 이상 연체 90일 이상 & 상환불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상환유예(6개월), 분할상환(10년)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분할상환(10년) 원금감면(최대 70%), 분할상환(8년) 원금감면(70~90%),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금융위원회
풍수해보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원율*을 일반가입자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 기초생활수급자 86%이상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행정안전부
농업인 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 영세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신청'에서 접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복무 중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겸직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병무청

2 의료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질박출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부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연령 무관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수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7회(기준대상 회당 110만원, 확대대상 회당 90만원) - 동결배아 5회(기준대상 회당 50만원, 확대대상 회당 40만원) - 인공수정 5회(기준대상 회당 30만원, 확대대상 회당 20만원) * 다만, 비용 집행 시 일부·전액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사전신청 ● 온라인(정부24) 사전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집행 유지(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10% 감안) ** 비급여 중 지원항목 : 배아동결 비용,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검진)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 없는 치료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등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희귀질환 등 환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보건복지부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안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청(사전)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11~18세 여성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전자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여성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포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7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650개소)하되, 사회 소외계층 100개소 이상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노인, 어린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폭염, 한파 등 대응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쿨루프 시공, 창호개선, 차양시설 설치, 냉·난방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환경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심리검사,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층:3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21.6월까지 적용) * 국가암검진(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 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로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연 최대 22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1.6월까지 적용) - 폐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 이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등급(1~5등급,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감경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보훈처

3 주거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급여 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4 교육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신청 	교육부
국가장학금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기초차상위)부터 최소 67.5만원(학자금 지원 8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연간 520만원(기초차상위)부터 450만원(4~8구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000원 (지원범위) 학기당 45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2~고3 학년 학생 ※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교육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상환학자금('09년 2학기 이후) 대출 대학 졸업생 및 기타사유*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고용·산업 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및 자녀, 대학생 창업자,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졸업 후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교육청별, 지원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 	교육부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자 중 소득 4구간 이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신청 불가(중복수혜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원 1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를 통해 신청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평생교육 바우처상담센터 ☎ 1600-3005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파란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5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20년 20개교)에 신청 *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참고 	교육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교육부
농업인자녀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 ~ 200만원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지원 가능액 차등, 차상위계층은 최대 지원한도(200만원)까지 지원 ** 국가장학금(1)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만원 단위 정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를 통해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3자녀) 가구 포함 ** 농촌에 주소를 둔 부모의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 용자(무이자) *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농림축산식품부

5 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차상위계층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교육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 보조기구, 목욕의자 등 19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정액(20천원),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장애인·노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서비스비용의 70~90% 국비지원, 10~30%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신청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상담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 건강(치과)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체험활동,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서비스,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제공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교육부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شم김이가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및 식사수발·체위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보훈처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5,000원, 연간 최대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아이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취업한 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돌봄(연 84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및 유선신청 *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확인 (www.youth.go.kr) 	여성가족부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치매공공후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환자로서 가족이 없는(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 배정인원 10% 범위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 (매년 6월) → 병무청에서 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업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편입 신청 	병무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법무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10시~17시 전국 65개 배치기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으로 전화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법무부
통합문화 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2015.12.31. 이전 출생자 (2021년 기준, 6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9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시·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를 통해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	* 상담전화(☎ 1688-4596)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우편신청	산림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포털 사이트 (svoucher.kspo.or.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만 12세 ~ 4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저소득층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시·군·구 주민센터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 (dvoucher.kspo.or.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문화체육관광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소방청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긴급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중환질병 등)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3,657천원), 재산기준(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은 7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생계</th> <th>주거 (대도시)</th> <th>복지 시설</th> <th>의료</th> </tr> </thead> <tbody> <tr> <td>지원액</td> <td>126.6만</td> <td>64.3만</td> <td>145만</td> <td>300만 (1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 상이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종류	생계	주거 (대도시)	복지 시설	의료	지원액	126.6만	64.3만	145만	300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요청 또는 신고 	보건복지부
종류	생계	주거 (대도시)	복지 시설	의료										
지원액	126.6만	64.3만	145만	300만 (1회)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 부부가구 270.4만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2인 가구 48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유형) 15~69세 저소득층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모두 충족 - 단, 청년층(34세 이하)은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완화 (2유형) 1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소득 무관), 특정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 지원(한도 300만원) 등 (2유형) 훈련참여시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원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www.work.go.kr/kua)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근로장려세제 (EI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구성별 (단독) 최대 150만원 (홀벌이) 최대 260만원 (맞벌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 (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ARS(1544-9944),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자녀장려 세제 (CTC)	●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득기준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 정기신청(5.1.~5.31.), 기한 후 신청기간 (6.1.~11.30.)에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ARS, (1544-9944),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 공고	국도 교통부
사회망홀씨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등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 지 대출	● 전국 15개 은행에 신청	금융 위원회
안전망대출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중 '18.2.7일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12~ 24%의 중금리 대출로 최대 2천만원 까지 대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한국자산관 리공사 지역본부 및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금융 위원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 임대보증금(10천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2%, 최대 지원기간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 (신청서류는 우편 제출)	중소 벤처 기업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만18세 이상)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 주30시간 근무, 월 125만원 가량 임금 지급	●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행정 안전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아동양육비(월35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online.bokjiro. go.kr)을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25세 이상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여성 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지원	온라인(online.bokjiro. go.kr)을 통해 신청	
햇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햇살론 : 생계자금 1천5백만원,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에 신청 	금융위원회
햇살론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낮은 신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17.9%(성실상환시 금리인하), 한도 700만원, 대출기간 최대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국 15개 은행에 신청 	금융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 어선 및 어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10톤미만/30톤미만/50톤미만/100톤미만 - 어선 10톤미만/20톤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 톤수별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원) 10톤 미만 70% / 30톤 미만 60% / 50톤 미만 30% / 100톤 미만 20% - (어선) 10톤 미만 70% / 20톤 미만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수협 또는 조합으로 문의 	해양수산부

2 의료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가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분 10%(90% 공단부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연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및 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40% 또는 60% 감경(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 없음.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 	보건복지부
치매 검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검사: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로 진단 받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부

3 주거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민임대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20년도 기준 394만원(3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해당주택 분양 시 공급기준에 맞춰 신청 	국토 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 하고, 사업시행자(LH·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 교통부
다가구 매입임대 출·용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 교통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자금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본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은행으로 신청 *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에서 대출 가능 	국토 교통부
영구임대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사업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 교통부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 60㎡ 이하) * 해당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주택을 최장 2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 	국토 교통부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월 29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 (시·군·구)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4 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어른생활 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인 가구 중 임신부·출산3개월이내·중위소득 50%이하 어촌지역 거주자 중 만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이하·다문화조손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다문화 및 65세이상 가구의 말벗 활동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수협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해양수산부
가족역량 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및 긴급 위기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 사례관리 및 상담, 자녀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사고·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대상 긴급위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www.familynet.or.kr) 	여성가족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기간 중 관할 시·군·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www.at4u.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상담전화(☎ 1588-26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